

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주요내용

한국채권투자운용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제 45 조, 동법 시행령 제 50 조 및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.

I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

1.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에서 제외

- ①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에 대한 총액과 증권에 대한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④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- ⑤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제49조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(이하 “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은 정보

2.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에서 제외

- ① 부동산(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- ②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
가.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, 투자자문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.
나.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5영업일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 회사 또는 계열회사인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
다. 법령 또는 행정지도에 따른 운용보고서 등에 포함되는 정보 또는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운용점검 및 상품설명자료 검증을 위해 판매회사 등에 제공하는 정보
- ③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

II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

1. 정보교류차단 대상

- ① 사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: 회사의 고유재산 운용 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(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및 투자자문업무 포함)

- ② 사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: 회사와 판매회사 또는 계열회사

2.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

- ① 회사 고유재산 운용업무: 회사의 고유재산에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, 미공개 중요정보
- ②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: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문업무에 관한 정보, 미공개 중요정보

III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

1.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

회사는 회사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해당 법인을 거래제한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·유지한다.

- ① 회사가 인수·합병의 중개·주선·대리·조언 업무, 주권(주권관련 사채권을 포함한다)의 인수업무 및 모집·사모·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·주선·대리·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. 다만,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②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
- ③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거래주의 목록 지정 기준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을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·유지하여야 하며,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등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, 회사와 임직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- ①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·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
- ② 회사를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. 다만,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.
- ③ 상기 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
- ④ 회사가 상기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(법 시행령 제201조제1항 각 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)
- ⑤ 계열회사 관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%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IV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

- 1. 다음 각호의 거래는 정보교류책임자의 사전승인 등을 거쳐 이해상충 가능성을 해소한 후 거래

- ①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,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,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
- ②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
- ③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
- ④ 특정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. 다만 세부지침 등에서 집합투자기구 유형별로 매매회전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.
- ⑤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. 다만 세부지침 등에서 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수령 한도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.

2. 다음 각호의 거래는 법령에 따라 거래 금지

- ①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의 특정증권 등(자본시장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을 말한다.)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(자본시장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.)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
- ②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- ③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
- ④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
- ⑤ 자신이 운용하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(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.)가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

정보교류 차단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, 그 변경의 내용이 주요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본 공개사항을 수정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.

2021 년 9 월 1 일

한국채권투자운용